

2024년 제1회 화천군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4년도 제1회 화천군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4년 5월 2일

화천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예정 직 급	채용 인원	근무 기간	근무예정 부 서	주요 예정 직 무
변 호 사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 [주35시간]	1명	2년	기획감사실 (법무T/F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소송 및 행정심판 업무 수행·지원군정 법률지원 및 무료법률 상담 등자치법규 제·개정 자문 및 심사
보건관리자	일반임기제 (지방보건서기)	1명	2년	안전건설과 (중대재해대응 T/F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화천군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업무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업무보건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실시보건과 관련된 작업 관리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 근무실적이 우수하고 사업을 계속하여 추진할 경우, 총 근무기간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무기간 연장가능

2. 채용근거

-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안부 최신 예규)
- 화천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자격 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공통응시자격 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 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응시연령 : 제한사항 없음
 - 성 별 : 제한사항 없음. 단,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지 역
- ① 변 호 사 : 제한없음
- ② 보건관리자 : 화천군 제한

- 1) 2024. 1. 1.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 최종예정일)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화천군 내**로 되어 있는 사람.(단,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 사실이 없어야 함.)
- 2) 2024. 1. 1. 이전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화천군 내**로 되어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 위의 두가지 요건 중 한 가지를 충족하는 사람으로,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 결격사유 》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면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로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채용자격

채용분야	채용자격 기준
<p>변 호 사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친 자 2. 판사나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자
<p>보건관리자 (일반임기제 8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추고, 경력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격요건(가~바 중 하나 이상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나. 「의료법」에 따른 의사 다.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마.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u>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분야의 학위*</u>를 취득한 사람 <p style="color: blue; margin-left: 20px;">【관련학위】 산업보건학과, 산업환경보건학과, 산업위생학과 등 산업보건 관련학과</p> 2. 경력요건(가~다 중 하나 이상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p style="color: blue; margin-left: 20px;">【관련분야 실무경력】</p> <p style="color: blue; margin-left: 20px;">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분야 등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보건관리자로 선임되어 업무를 담당한 경력</p>

주 1. 채용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은 최종 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함.

4. 근무조건

[단위 : 천원]

채용직급	근무조건	보수수준		
		본 봉		수 당
		상한액	하한액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 (번호사)	주5일, 35시간 근무 (1일 7시간)	-	65,346	관련 규정 준용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반임기제 8급 (보건관리자)	주5일, 40시간 근무 (1일 8시간)	58,248	41,551	관련 규정 준용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 채용예정직급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을 기준으로 책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근무시간 비례 협의 책정)
- ※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 희망 시 가입 가능(단,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시험방법

○ (1차)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학위, 경력 등이 임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2차)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을 종합적 평가
- 면접결과 공개 : 면접자가 요청한 경우 평가결과를 종합한 상·중·하의 개수 공개 (단, 평가요소별 상·중·하는 비공개 대상)

※ 평가기준 : 5개 항목(공무원의 정신자세, 전문지식 및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6.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4. 5. 20.(월) ~ 5. 22.(금) / 3일간, 09:00 ~ 18:00

○ 접수장소 : 화천군청 자치행정과 행정담당

※ 우편주소 : [24125]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화천새싹길 45, 화천군청 자치행정과 행정담당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방문 또는 우편접수(등기)

- ❖ 우편 접수 시 「우편 통상환증서(해당 접수금액 상당)」를 구입하여 동봉해 주시기 바라며, 2024. 5. 15.(금) 소인분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 등기우편 신청자는 접수마감일까지 우편을 통해 지원서류를 신청함을 우선으로 사전에 알려주시기 바라며(☎033-440-2238), 응시표는 휴대폰 문자 등 별도 방법으로 고지·송부합니다. ▶ 통상환증서 금액 : 시간선택임기제 가급(10,000원) / 일반임기제 8급(5,000원)

○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사진 2매) 1부

- 화천군청 민원봉사실(1층) 「화천군 수입증지」 인증 * 방문접수 시
(시간선택임기제 가급(5급) : 10,000원 / 일반임기제 8급 : 5,000원)
※ 우편 접수 시 해당금액 상당 우체국 통상환증서 동봉

② 이력서 1부

- 이력서의 경력 및 학위사항은 경력(재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학위증서)를 제출한 사항만을 기재

③ 자기소개서(A4용지 2~3매 분량) 1부

④ 직무수행계획서(직무제안 포함 A4용지 2~3매 분량) 1부

⑤ 응시자 적격여부 확인사항 1부

⑥ 경력(재직)증명서 1부

- 경력(재직)증명서는 가급적 최근 2개월 이내 발행분을 제출하여야 하며,
- 경력(재직)증명서는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의 날인과 연락처, 응시자의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근무기간, 상근/비상근 여부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서류여야 함. (비상근 및 시간제 근무경력은 경력산정을 위하여 근무시간 반드시 명기)

- 제출된 경력(재직)증명서로 해당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응시자가 경력(재직)증명서 발급기관에서 당해 분야임을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 ⑦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s.or.kr>)에서 발급)
 - 관련 자료는 ‘⑥경력(재직)증명서’ 를 증빙할 수 있어야 함
 - ▶ 제출이 어려운 경우 근로 계약서, 금융기관 근로소득납세증명 등을 통해 경력(재직)증명사항을 추가로 입증하여야 함.
- ⑧ 주민등록 초본 및 등본 각 1부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⑨ 최종학력졸업(재학)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1부
- ⑩ 응시자격과 관련된 자격(면허)증 사본 각 1부
- ⑪ 자격요건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⑫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 안내 1부
- ⑬ 기타 증빙서류 (희망자에 한하여 제출)

7. 시험일정

- 시험공고기간 : [2024. 5. 2.\(목\) ~ 5. 16.\(목\) / 15일간](#)
- 응시원서 접수 : [2024. 5. 20.\(월\) ~ 5. 22.\(수\) / 3일간](#)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시·장소 공고 : [2024. 5. 28.\(화\)](#)
- 면접시험 : [2024. 6. 4.\(화\)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 [2024. 6. 8.\(금\) \(예정\)](#)

8. 기타 유의사항

-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 후 응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미비된 서류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불합격자에 한해 원하는 경우 원본 서류는 반환 가능합니다.
- 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서류 미제출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착오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라.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마.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 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시행계획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합니다.
- 바. 합격자의 결정은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하되, “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로 함)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사.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아. 최종 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 자. 화천군인사위원회에서 같은 날짜에 시행되는 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차.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화천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천군 자치행정과 행정담당(☎ 033-440-223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정직무 관련 문의사항 문의처**

담당부서	기획감사실	전화번호	033-440-2218
------	-------	------	--------------

직 무 기 술 서

◇ 변호사 (시간선택임기제 가급)

근무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선발예정인원
화천군	기획감사실	1명

주요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송 및 행정심판 업무 수행·지원 ○ 군정 법률지원 및 무료 법률 상담 등 ○ 자치법규 제·개정 자문 및 심사 등
-------------	---

필요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역량) 공직윤리, 공직의식, 군민지향 마인드 ○ (직급역량) 상황인식/판단력, 팀워크지향, 의사소통 능력, 조직헌신 ○ (분야역량) 법률적 전문지식 등
-------------	--

필요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송 및 행정심판 등 각종 소송수행절차 이행 등 (답변서 작성/검토 및 준비서면 작성, 패소원인 분석 등) ○ 법무(행정법, 형법, 민법 등) 관련 전문 지식 ○ 문서 기안 및 편집, 컴퓨터 활용 능력 등
-------------	--

채용분야 : 변호사	
응시자격요건	경 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친 자 2. 판사나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자
우대사항	○ 해당없음

직 무 기 술 서

◇ 보건관리자 [일반임기제 8급]

근무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선발예정인원
화천군	안전건설과	1명

주요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 ○ 위험성 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연간 산업안전보건계획 및 보건교육 계획 수립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 관리, 유해인자 노출근로자 보호 ○ 근로자 보호 건강상담, 응급처치 등 의료행위 ○ 사업장 순회점검, 유해요인 제거 조언, 현장 보건교육 실시 ○ 산업재해 발생 원인 조사, 재발 방지 관리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유지·관리·분석 관리 ○ 사업장 보건 점검 결과보고서 작성
-------------	---

필요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역량) 공직윤리, 공직의식, 군민지향 마인드 ○ (직급 및 분야역량) 전문성, 적극성, 문제해결력, 협업능력 등
-------------	--

필요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보건 분야 경험과 전문지식과 실무경험 ○ 사업장 유해·위험 물질에 대한 조치 등 전문지식과 실무경험
-------------	--

채용분야 : 보건관리자	
응시자격요건	<p style="text-align: center;">경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추고, 경력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p style="text-align: center;"><자격요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업안전보건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간호사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보건 또는 산업위생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small;">[관련학위] 산업보건학과, 산업환경보건학과, 산업위생학과 등 산업보건 관련학과</p> </div>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p style="text-align: center;"><경력요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small;">[관련분야 실무경력]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분야 등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보건관리자로 선임되어 업무를 담당한 경력</p> </div>
우대사항	○ 해당없음